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가단14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691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가단14135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1. 10.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서울 강남구 C 대 287.5㎡ 중 287.5분의 27.37 지분에 관한 2009. 7.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라는 판결을 원인으로 2009. 8. 27. 제66481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060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등

(1)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E, F, G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0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30. 원고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서울 강남구 C 대 287.5㎡ 중 287.5분의 27.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낙찰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중 선정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3/9에 관하여, 선정자 E, F, G에 대하여는 각 2/9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2. 7. 29. 접수 제8989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5. 1.

2009나3059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7. 23. 2009다38940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0789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등

(1) 제1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의 제1판결에 기초한 대위신청에 의하여 2009. 8. 27.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0789호로 위 2009. 8. 27.자 말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2. 원고의 주장(피고의

남편 D가 2002년부터 시작된 수회의 재판에서 담당 법관 등을 속여 왔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060 판결은 D가 비틀어 놓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을 빙자한 사기를 바탕으로 피고가 각급 법원을 속여서 편취한 것이므로, 제1판결에 따라 말소된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9.

2016나5396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7421 판결(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7421호로 재차 위 2009. 8. 27.자

말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12. 위 2009. 8. 27.자 말소등기는 소송사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위 말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확정된 제2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제3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제3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555 판결(이하 '제4판결'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555호로 재차 위 2009. 8. 27.자

말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24. 위 2009. 8. 27.자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위 말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확정된 제2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0. 30.

2019나25621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0. 30. 2019다288768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나5010 판결(이하 '제5판결'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나5010호로 제4판결의 항소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25621 판결 및 제4판결의 취소와 위 2009. 8. 27.자 말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1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가 위 제5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제5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위 2009. 8. 27.자 말소등기는 소송사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주장은 기존의 제2, 3, 4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임에도 이 사건 소를 통해 재차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 13년간 총 5회의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원고는 2016년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1개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되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종전의 제1, 2, 3, 4, 5판결을 통해 수회 배척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